

안건번호	제 4 호
심 의 년 월 일	2006. 6. 22. (제 16 회)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제정 및 향후계획(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제 출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국 방 부 장 관 윤광응	농 립 부 장 관 박홍수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환 경 부 장 관 이치범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해양수산부장관 김성진
제출년월일	2006. 6. 22.	

안 건 요 약

1. 추진배경

- 줄기세포연구 논란을 계기로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진실성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창구, 연구진실성 검증시스템 및 내부제보자 보호장치 등이 미비한 실정

2. 추진경위

- '06. 1.11일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 (국정현안조정회의)
- 각계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 토론회(3.29) 개최
 - * 원로정책자문회의(3.3), 전문가회의(3.15), 관계부처회의(3.23)
-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보완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실시* 및 대국민 공청회(6.7) 개최
 - * 인터넷 토론방 개설(3곳) 및 간담회 개최(총 5회)

3.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지침)안」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및 연구지원기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들에 대하여
 -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
 - 각 기관별 실정에 적합한 자체검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공통기준을 제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가이드라인의 근거 및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 연구관리체계와 연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체계는

-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검증을 수행토록 하고,
-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자체검증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따라 후속 조치
- * 다수 연구기관이 관련되거나, 국가·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국과위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조사

4. 향후 조치 계획

① 연구기관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및 해설서를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현장방문 설명 및 자문 ('06.7월~)
-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점검 ('06.11~12월)

②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립 노력 지원

- 「연구자 윤리 규범」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제정토록 지원 (~'06.12월)
- 연구윤리 확보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③ 연구윤리 교육 강화

- 연구윤리 교육 과정 개설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07.1~10월)
- 「연구윤리」를 대학 교양과목으로 개설 추진 ('08.3월)

④ 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 확대 실시 및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07년~)
- 연구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06.4~5월)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개선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제정 및 향후 계획(안)

2006. 6. 22.

교육인적자원부 과 학 기 술 부
국 산 업 방 자 원 부 농 보 립 통 신 부
보 건 설 교 통 부 정 보 통 경 산 부
건 설 교 통 부 환 양 수 부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추진경위	2
III. 해외 관련동향	3
IV.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안」 주요 내용	4
V. 향후 조치계획	6
VI. 관계부처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	10
[붙임 1]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안」	13
[붙임 2] 가이드라인(지침) 제정안 주요 쟁점 및 관련 내용 ...	20
[붙임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내용 ...	21
[참고 1] 국내 연구부정행위 사례	25
[참고 2] 해외 연구부정행위 사례	26

I. 추진배경

- 즐기세포연구 논란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진실성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제도 도입
 - 그동안 표절, 조작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연성이 제기([참고 1] 참조) 되었으나 과학기술계의 자체적인 검증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창구, 연구진실성 검증시스템 및 내부제보자 보호장치 등도 미비한 실정
 -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언론을 통해 먼저 제기되고 연구진실성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적 갈등 및 혼란을 초래

- 지난 1.11일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 (국정현안조정회의)
 -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고,
 - 연구수행기관 및 관계부처는 동 지침을 토대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따라 자체 규정 및 검증 시스템 마련

- 아울러, 보다 실효적으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II. 추진경위

- '06. 1.11일, 국정현안조정회의 및 당정협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합의
- '06. 1.19일, 관계기관·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 수렴
 - * 과총, 한림원, 연구회, 산기협, 대학연구처장협의회 관계자와 5개 부처(과기·교육·산자·정통·복지부) 담당관 및 민간전문가 참석
- '06. 2.20일,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에서 과기부 주관으로 연구윤리·진실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
- 각계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 토론회(3.29) 개최
 - * 원로정책자문회의(3.3), 전문가회의(3.15) 등
-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안)을 1차 보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실시
 - 인터넷 토론방 개설(4.13~31)
 - * 과기부, 과총, 브릭(생물학 연구정보센터) 등 3곳
 - 과학기술 각계와의 간담회 개최(4~5월)
 - * 출연연(4.14, 대전), 대학(4.26, 부산), 유관단체(5.2, 서울), 대학원생(5.11, 서울 / 5.16, 대전)
-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6.7)

III. 해외 관련동향

- 선진국의 경우도 자국내 대형 연구부정행위 사건([참고 2] 참조)을 계기로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 마련에 착수
-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연구기관의 자율검증시스템 구축을 지원

<가이드라인 예>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 지침(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
- 미국 연방정부(2000년)
- 훌륭한 학문연구를 위한 권고안(Vorschlaege zur Sicherrung guter wissenschaftlicher Praxis)
- 독일연구재단(1997년)
-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보호조항(Safeguarding good scientific practice)
- 영국 과학기술청 & 8개 연구회 공동(1998년)

- 현재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에 대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임

- 동경대 등 학계에서 논문조작사건이 잇따르자, 산업기술총합 연구소, 이화학연구소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

* 일본학술회의는 지난 4월 「과학자의 행동규범」을 발표

-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문부과학성이 연구부정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

- 한편, '06.2월 OECD GSF(Global Science Forum)에서도 과학부정행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논의를 추진키로 결정

- 우리나라를 비롯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미국 등 대다수의 회원국들도 동 작업에 대해 지지를 표명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함께 '과학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분석 그룹에 참여

IV.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안」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 및 역할과 연구진실성 검증 표준절차 등을 규정

○ 각 기관들이 기관 실정에 적합한 자체검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공통기준을 제시

* 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소

* 연구지원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지침안의 주요내용

□ 동 지침은 총 3가지 부분으로 구성

① 총 칙

-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용대상, 적용범위
- 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의
-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②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

-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교육 강화
-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체계 마련 및 연구지원기관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권한과 역할
- 연구진실성 검증과정에서의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③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과 절차

-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검증 책임주체, 검증절차 및 검증기구 구성원칙
- 조사결과의 보고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공통기준 등

□ 동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는 모든 대학 및 연구기관

○ 이 중 30개 정부출연(연) 및 최근 3년('02~'04)간 연평균 정부연구비를 100억원 이상 수탁한 27개 대학은 금년 말까지 자체검증시스템(자체규정, 검증기구 등)을 구축토록 할 예정

□ 동 지침은 과학기술부총리 지침으로 제정하고, 제정근거 및 주요내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 ([붙임 3] 참조)

○ 국가 연구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지침의 실효성 확보

□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구기관에 자체검증 책임이 있으며,

○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자체검증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따라 후속 조치

* 다수 연구기관이 관련되거나, 국가·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국과위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조사

연구부정행위 발생

해당 연구기관이 1차적으로
자체검증 수행

검증결과 및 조치결과를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연구지원기관은 검증 및 조치결과의 타당성과 알리성 검토 후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연구비 회수 등 후속조치 실시

V. 향후 조치 계획

《 기본방향 》

성 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책임성 확보
- 선진형 연구풍토 및 기반 조성
-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

《 연구윤리 확보 기반 구축 》

-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제거
- 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 창의적이고 정직한 연구문화 확산
-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 》

- 연구윤리 교육 강화
- 과학기술계 자체 연구윤리규범 정립

《 연구부정행위 사후관용 》

-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 ORI 설치·운영

<현재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각부처 대책 현황>

분야	주요 추진내용	추진주체
과학기술인의 연구윤리 및 사회적 책임 제고	과학기술인 연구윤리현장 제정 지원 과학기술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06.3월)	과총, 과기부, 한림원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윤리규범 소개책자 제작, 대학에 배포('06.3월) 대학 교양과목으로 개설 추진('08.3월)	교육부
특정분야 연구윤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추진 ('06.3월) 생명과학연구자 연구윤리교육 로드맵 수립(~'06.7월)	보건복지부
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연구현장 애로사항 설문조사('06.4월) 대학원생 인건비 폴링제 시범실시('06.3~9월)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작성·보급('06.10월)	과기부 (혁신본부)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정('06.6월) 연구기관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지원('06.7~12월)	

① 연구기관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현장방문 설명 및 자문 ('06.7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들의 자체검증체제 구축 여부 및 운영 현황 점검 ('06.11~12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지침의 제정근거 및 주요내용 반영 ('06.6~8월)
-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 추진체제 구축
 - 부처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연구윤리·진실성 관련업무* 담당부서(ORI : Office of Research Integrity)를 설치 또는 지정
 - *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연구윤리 교육, 연구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결과 점검 및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실시
 -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 범정부 차원의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점검·평가·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②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립 노력 지원

- 과학기술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자 윤리 규범」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제정토록 지원 (~'06.12월)
 - 동 규범을 토대로 각 학회들의 자체기준 제정 확산 유도
- 국제 연구윤리/진실성 포럼 개최 ('07.상반기)
 - 국내외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고양하고 관계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 연구윤리 확보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기관평가 및 간접비 등) 제공
 - 자체검증체제 구축·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3 연구윤리 교육 강화

-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07.1~10월)
 - 학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현장 연구자, 윤리학·철학·교육학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편적인 연구윤리 교육 내용 마련
 - * 현재 바람직한 연구 수행 및 연구 문화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이 부재하여 연구원 및 연구실마다 제각각 상이한 관행 및 자체기준이 존재
- 「연구윤리」를 **대학 교양과목**으로 개설 추진 ('08.3월)
 - 개발된 연구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토대로 '08년도부터 각 대학이 강좌를 개설하도록 적극 유도
-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 실시 ('07.9월~)
 - 도덕, 과학 등 관련 교과 교육과정 개정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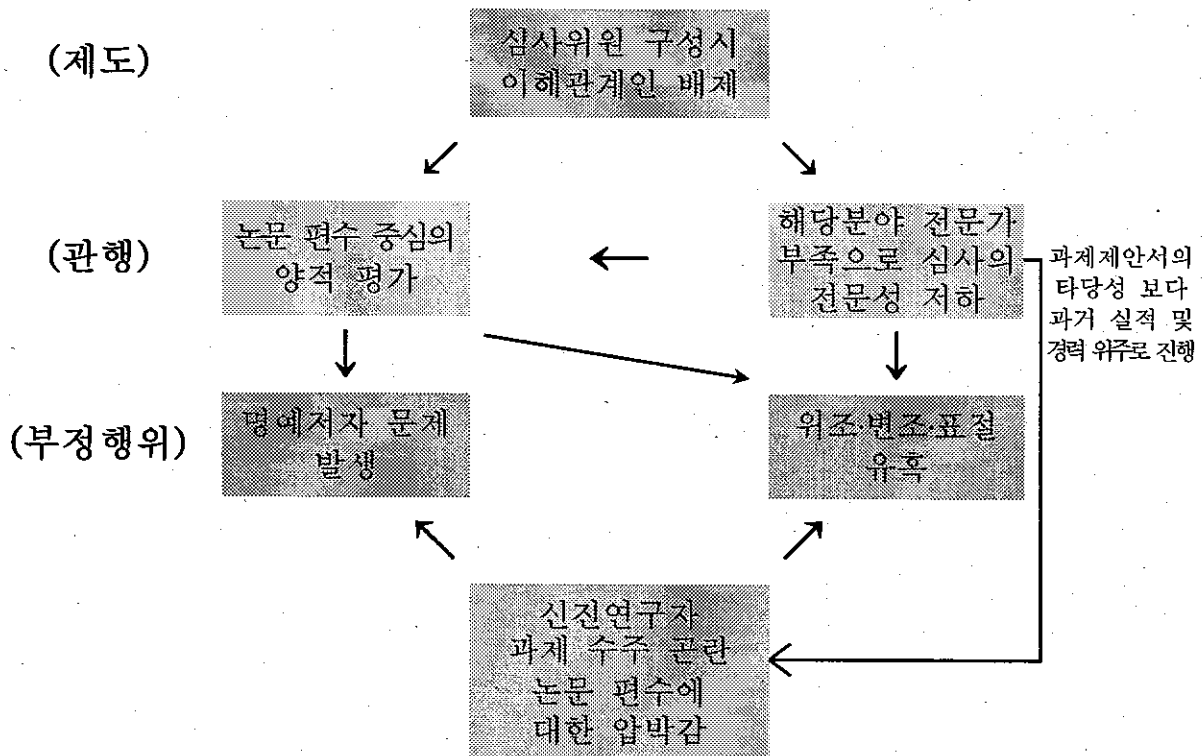
4 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 **연구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06.4~5월)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개선
-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 확대** 실시
 - 현재 4개 기관* 시범실시('06.1~'07.1월) 결과를 토대로 연구비 관리시스템 평가지표 등을 보완하여 '07년부터 확대 실시
 - * 원자력연, ETRI, 포항공대, 성균관대
 -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07년~)
 - 인건비를 단일계정으로 통합 관리하고, 연구참여율에 따라 지급
 - 시범실시*('06.4~10월) 결과를 토대로 확대 적용방안 수립 추진
 - * 과기, 교육, 산자, 정통부 소관사업의 9개 연구실 대상

5] 국가연구개발제도의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개선

- 연구현장에 대한 설문조사('06.4~5월) 결과 및 연구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제도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진실성 저해 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 연구현장 인터뷰시 대학원생, Post-doc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모니터팀 운영
-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과기장관 회의에 상정 ('07.상반기)
 - 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방안 수립

<연구개발제도와 연구부정행위간 상관관계도>



VI. 관계부처 역할분담 및 향후 추진일정

과제명	세부과제	담당 부처	'06년			'07년			
			2/4	3/4	4/4	1/4	2/4	3/4	4/4
① 연구기관 자체검증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지침」 및 해설서 제작·배포	과기부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지원·점검	과기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과기부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과기부,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등							
②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립 노력 지원	「연구자 윤리 규범」 제정 지원	과기부							
	국제적인 연구윤리·진실성 포럼 개최	과기부, 교육부, 복지부							
	우수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과기부, 교육부 (출연연, 대학)							
③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	교육부							
	「연구윤리」를 대학 교양과목으로 개설 추진('08.3월)	교육부							
	초·중·고교생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실시	교육부							
④ 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연구환경 및 연구실 문화 관련 개선사항 발굴·개선	과기부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 실시	과기부							
	학생 연구원 인건비 플링제 도입	과기부							
⑤ 국가연구개발제도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개선	연구윤리 저해요소 진단	과기부, 교육부							
	연구환경 개선방안 마련 및 과기장관회의 상정								

【붙임】

1.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안」
2. 가이드라인(지침) 제정안 주요 쟁점 및 관련 내용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내용

< 붙임 1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들에게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지침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연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7조제1항제1호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①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지원기관은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①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①연구기관은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②자체규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지원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연구지원기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②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연구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연구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의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관의 형태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9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본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판정)**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③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에의 보고) ①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연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연구지원기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8조제3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조사위원회)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2. 2개 이상의 연구지원기관이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도출이 어려운 사안
3. 부정행위에 연구지원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안

②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제1항의 대상기관 중 별표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윤리의 제고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과 진실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지침에 따라 자체규정 및 검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기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최근 3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 ('05년말 기준 총 27개)

< 붙임 2 > 가이드라인(지침)안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관련 내용

쟁 점	관련 내용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	부총리 지침으로 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둠
연구자 윤리규범 포함 여부	정부 가이드라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당사자인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역할 및 책임에 집중하고 연구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윤리 규범은 과총 등 과학기술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생명윤리 분야 적용 여부	생명분야 연구윤리 부분은 생명윤리법, 연구진실성 부분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음
인문사회계 적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중이 큰('04년 기준 96.2%) 과학기술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정 가이드라인 내 인문사회계 준용 가능성을 명시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포함의 적합성	국내 연구풍토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 중의 하나로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연구부정행위로 볼 필요
연구부정행위 입증책임	조사 및 제재의 권한을 가진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입증책임을 두는 것이 합리적
제재의 종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 * 과제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등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문제	각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 연구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결과 점검 및 필요한 후속조치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ORI)를 지정 또는 설치 가능 범정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운영 점검·평가·개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지정 또는 설치

< 붙임 3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반영 내용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3개 조문 신설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지침) 근거 마련 (제1조)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자체규정 마련 의무 부여 및 연구윤리 교육 등 지원 (제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용 명시 (제2조제2항)
 - 국과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제3조)

제1조(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운영)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와 기준
4.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5.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대학 등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 ①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및 제1항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2.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3.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4. 3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이 제1항의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를 실태조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및 자체성과평가
 2.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 및 조정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결정
- ④과학기술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이 제1항의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과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특별조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1.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도출이 어려운 경우
 3. 부정행위에 전문기관 등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 ②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위원은 법률 및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연구분야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⑤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준에서 정하는 조사위원회 운영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절차를 준용한다.

【참 고】

1. 국내 연구부정행위 사례
2. 해외 연구부정행위 사례

< 참고 1 > 국내 연구부정행위 사례

일시	사건개요	처리결과
'98. 7월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K박사팀이 '98.1월 제출한 「중소기업 청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가 생산기술연구원의 '96년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발표	'96년 당시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에 참여했던 C박사가 문제가 된 논문에 과거 실험 결과를 다시 사용한 것으로 해명 *그러나 외국에서는 비록 본인이 생산하였더라도 동일한 데이터를 2 이상의 논문에 중복하여 실는 것은 연구부정행위로 간주
'98.8월	국립환경연구원은 표준과학연구원의 S박사팀이 수행한 상용차 흡음제 개발 프로젝트에 논문조작이 행해짐을 발표	S박사팀에 경고하고 비소모성 경비를 환수
'98.12월	한양대 C교수가 Nature지에 실린 경희대 물리학과 J교수의 논문이 자신이 것과 유사하다고 문제 제기	J교수는 C교수의 방법은 이미 보편화된 것이며 자신의 논문은 이를 더 발전시킨 것이라 반박
2001	미 커뮤니케이션스 매거진은 경북대 P교수, 동서대 B교수, 포항공대 H교수 등 3명이 공동명의로 게재한 논문이 캐나다 연구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발표	해당 잡지에 3인 공동명의로 사과편지 게재, 동서대는 B교수의 표절로 드러나면서 사표 수리
2002	캠브리지대와 KAIST 공동조사 결과 금오공대에 재직 중인 P교수가 캠브리지대 재학 시절 러시아 연구원의 논문 7편을 표절한 사실을 발표	P교수는 금오공대에서 재직 한 학기만에 면직됨
2005	서울대 조사위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 파면 과기부는 최고과학자 지위 박탈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법정책 연구(‘06.2, 김옥주)」 내용을 정리

< 참고 2 > 해외 연구부정행위 사례

국가	사건명	사건개요	처리결과 및 특징
미국	윌리엄 서머린 사건 (1974)	면역학자인 서머린이 흰 쥐의 피부 일부를 검은 펜으로 칠하고선 마치 검은 쥐의 피부 이식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발표. 일명 '색칠한 쥐' 사건	연구소에서 해고 미국에서 대중적 주목을 끌었던 최초의 데이터 조작 사례로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
	존 다시 사건 (1981)	하버드 의대에서 촉망받던 심장병 연구자인 다시가 학부시절부터 환자나 공동연구자의 허위기재를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수많은 명예저자를 자신의 논문에 등록	해고 및 100여편에 달하는 논문과 초록들을 철회 부당한 저자표시 문제를 환기
영국	말콤 피어스 사건 (1994)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발표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논문 두편이 날조된 것으로 밝혀짐	해고 및 의사면허 박탈 논문초고에 대한 동료심사 미비 및 명예저자 문제를 환기
독일	헤르만-브라흐 사건 (1997)	유전자 치료 및 암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분자생물학자인 프리트헬름 헤르만과 마리온 브라하가 공저한 수십 편의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짐	97편의 논문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자 헤르만과 브라흐는 각각 사퇴 또는 파면 당함 2차 대전 이후 유럽 과학계에서 일어난 최대규모의 연구부정행위 사건
일본	다이랴 가츠나리 사건 (2005)	세계적인 리보핵산(RNA) 연구로 명성이 높은 다이랴 교수의 네이처지 논문 4편이 동경대 자체조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드러남	연구실 해체 및 파면 연구부정행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등 황우석 사건과 유사

※ 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된 각국의 유명한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정리